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0-95

제출연월일: 2020년 10월 일
제 출 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제 조문 및 수강료 미반환 규정 등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 규정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 완화 (안 제7조 및 제8조)

나.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근거 명확화 (안 제7조의2제2항)

다. 수강료는 조례 별표1에서 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제7조의3)

라.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 대상 확대 (안 제7조의4)

마. 수강료 미반환 원칙을 반환원칙으로 수정하여 적극행정 유도 (안 제7조의5제1항)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도서관법」제27조 및 제29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8.28.~2020.9.17.)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강서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강서구”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중에의 이용”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직원을지휘ㆍ감독한다”를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장은 도서관 강의 및 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설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징수”를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전액면제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전액면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경

제7조의3의 제목 “(수강료 등의 징수)”를 “(수강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4(수강료 감면)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의5의 제목 “(수강료 등의 반환)”을 “(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의5제1항제2호 중 “불가능 한”을 “불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강신청자가 수강 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도서관 시설의 훼손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 중 “자료를 망실 또는”을 “자료를”로 한다.

제1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신분증 소지자”를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경우에는자료”를 “경우에는 자료”로 한다.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중 “검수시 동자료”를 “검수 시 같은 자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상호”를 “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시”를 “교환ㆍ이관·폐기ㆍ제적 시”로,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3조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과 도서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생 략) 3.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에 의거 법인・	제3조(정의) ---------- 각 호-----. 1.・2. (현행과 같음) 3. ---------- 사무 중 ----------

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제4조(기능) ---------- 각 호 ----------.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1. ---------- 공중의 이용에 제공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생 략)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현행과 같음)
②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는 구청장과 협의하	② ----------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사용 등)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열람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 등) ① 관장은 도서관 강의 및 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 부대시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설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사용료 등 징수) ① -----------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전액 면제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전액 면제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경
③ 다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감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 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7조의3(수강료 등의 징수) ① (생 략) ②제1항의 수강료 및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3(수강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4(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의4(수강료 감면) 수강료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감면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강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의5(수강료 등의 반환) ①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경우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천재	제7조의5(수강료 및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환불	---------- 불가능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4. 수강신청자가 수강 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때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도서관 시설의 훼손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4.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제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입장의 제한) ---------- 사람----------.
제12조(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제12조(대출) ① ---------- 각 호---------- 사람에게 ----------.
1. 도서관에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1. ----------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2. ---------- 해당 ----------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기타 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그 밖에 ---------- 경우에는 자료----------.

제15조(행정자료) 구 및 구의회 물품출납원은 각 담당관·과에서 발간되는 각종 간행물 검수시 동자료 2부를 도서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행정자료) ---------- 검수시 같은 자료 ----------.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 및 폐기·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5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 서로 ----------. ② 제1항에 따른 ---------- 교환·이관·폐기·제적시---------- 제3조에 따른다. <삭 제>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 필요한----------.
[별표 2]	<삭 제>

[별표 2] (신설 2008.7.17)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의5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7조의5 제4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수업시간의 1/6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6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행정관리국 교육청소년과 과장 김 송 자

(담당 : 행정8급 조 아 라 / ☎ 2600-6986)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제 조문 및 수강료 미반환 규정 등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 규정을 수정하여 불합리한 규제 완화 (안 제7조 및 제8조)

○ 구립도서관 시설 사용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근거 명확화 (안 제7조의2제2항)

○ 수강료는 조례 별표1에서 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제7조의3)

○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 대상 확대 (안 제7조의4)

○ 수강료 미반환 원칙을 반환원칙으로 수정하여 적극행정 유도 (안 제7조의5제1항)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도서관 시설 허가 규정을 완화하고, 사용료·수강료 감면율 및 반환 규정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 가 번 호	2020 - 43				
자 치 법 규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교육청소년과	통보(조치)일	2020. 9. 16.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서울강서044			
정 책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교육청소년과		
	담당자명	조아라	전화번호	02-2600-698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9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율을 규정하여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제 조문 및 수강료 미반환 규정 등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9월 0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교육청소년과장 귀하

붙임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27조(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2]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조제2항 관련)

1. 도서관자료의 교환 및 이관의 기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